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2023. 11. 29.  
의회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. 11. 17. 장정희 의원 외 9명
- 나. 회 부 일: 2023. 11. 20.
- 다. 상정일자: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(2023. 11. 2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고병준 의원

- 가. 제안이유  
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자격사항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경력 및 윤리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됨.

## 3. 검토의견 [신준호 전문위원]

- 가. 조례 개정 배경
  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운영되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지역제한과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극히 정치적이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.
- 나. 주요 조문 검토
  - 안 제2조제2항의 검사위원 선임 조건인 서울특별시내 거주 및 재직 조건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진입제한 요건을 해제하고자 삭제하였

고,

- 안 제2조제2항 제2호 “정부투자기관”이라는 모호적 기관명칭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으며, 동시에 경험 요건을 ‘3년’으로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제1항의 감사위원중 의원의 대표의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제1항에서 감사위원의 신분상실 요건으로 세금의 체납사실을 규정하였음.

#### 다. 종합의견

-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하여 계수로 표시하는 행정행위로서 감사위원은 예산과의 괴리 정도와 재정 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- 결산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 지역제한을 규정하여 공정경쟁제한으로 진입장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임. 이는 공정한 선임 과정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음.
- 이에 타 지역 후보자들이 뛰어난 자격으로 전문가로 선발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삭제하고, 경험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“3년”으로 명시한 것은 인력자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영향으로 선발되는 문제점이 해소되는 등 위원 선임의 시스템적 투명성이 확보되어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.
- 기타 감사위원의 도덕성 확보를 위한 세금 체납시 자격상실요건은 감사위원의 품위 유지 및 임무수행의 도덕성과 윤리적 이행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본 개정조례의 심사시 우리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

는 조례 관리부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.

- 본 조례 목적과 업무는 ‘마포구 결산에 대한 검사 의무’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한 결산검사 운영이 집행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. 하지만, 감사위원을 의회에서 의결로 선임한다는 이유로 조례 관리를 ‘의회사무국’에서 운영하고 있음.
- 이 같은 사항은 결산검사 행위 주체는 입법부(의회)가 아닌 행정부(구청)가 주체로서 검사업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조례 관리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 조례 운영 관리의 합목적성을 위해 행정부(구청)인 재무과로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.

※ 결산검사 관련 법령 부서별 관리 현황

- 조례 제정·운영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: 전체 258개
- 회계 및 재무과 등 : 131개, 의회사무처/국 : 127개

# [관 계 법 령]

## 「지방자치법」

- 제150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- 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"감사위원"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